

알기 쉬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김상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1과장

서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현대경제사회생활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량적 거래와 신속한 거래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의 종류에 따라 미리 계약서 내용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계약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약관은 대량거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서 일상생활에서 그 이용이 보편화되고 필수품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입장에서는 약관을 이용함으로써 대량적·반복적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여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약관이 보충해 주는 기능도 수행해주며 무역, 금융, 보험, 운송분야 등에서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약관이 생겨나고 국제 상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고객입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그것을 소비하는 일상생활에서 그때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일일이 흥정을 통해 계약내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는다

면 양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 당사자마다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 이행에 있어서도 불편과 복잡함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약관이 소비자,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용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관의 부정적인 기능과 폐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즉 기업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약관의 병리현상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약관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내용을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계약 당시에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제시하여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약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구체적 분쟁해결방식이 있으나 사법적 규제는 사후적이고 판결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약관분쟁은 다수성, 소액성, 전문성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민사소송으로서 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특정고객의 피

해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유·무효를 판단하고 그 시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약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약관법을 별도로 제정·운용함으로써 포괄적 입법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86년 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시급한 것은 약관의 전체 수준을 적정한 선까지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 입법인 약관법을 제정하였고 약관심사제도 운영은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서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효인 약관조항을 시정 권고함으로써 약관규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92년 12월 약관법 1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정명령 제도 도입, 표준약관 제도 도입, 약관심사업무의 공정거래위원회에로의 이관 등이었으며 동 내용이 현재의 약관심사업무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약관규제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약관규제제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무효로 간주되는 불공정 약관의 유형 및 사례를 분석한 후 약관심사절차, 시정조치 제도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약관규제제도의 법적 성격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약관심사는 약관법에 의거하여 약관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과는 관계없이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유·무효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약관의 효력문제는 사업자와 고객간의 권리관계에 관련되는 사법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약관규제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 행정적 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 가능하다 하겠다.

법 제정 당시에도 법원에 의한 약관심사제도를 검토한 바 있으나 약관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서는 현행 민사소송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나 너무 방대한 작업이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약관심사의 담당기관을 행정부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2. 약관법의 법적 성격

가. 약관규제를 위한 일반법·기본법

약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거래 즉 사업자 대 소비자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거래를 위한 약관에도 적용되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하고(법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약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30조 제3항)

나. 행정법규로서의 약관법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적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우월적 지위

가 현저하거나 고객에게 선택범위의 제한, 계약 체결의 신속성, 긴급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발하는 등 강한 행정적 규제가 행해진다.

다. 약관법과 공정거래법의 연관성

공정거래법은 경쟁질서의 유지·발전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법체계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관법의 목적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한다는 측면과 거래활동이 통상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관법은 약관거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보다 범위가 좁고 특수성이 강한 성격을 갖는다.

라. 소비자보호의 특별법으로서의 약관법

약관법도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률의 제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약관법은 소비자보호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약관법과 사법 체계의 관계

근대시민법은 거래주체의 대응성을 전제로 계

약자유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결과 기업간에 힘의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이들간에 종속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거대자본의 집중에 의한 시장지배는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어 일반 소비자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국가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개입하기 위한 경제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약관법은 근대 시민법의 비판법 내지 수정법으로서 새로운 법 사상에 의한 법이며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었고 약관이 이용된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법이 민·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

약관규제제도의 내용

1. 약관법의 적용대상

가. 약관의 정의

약관법 적용 대상으로서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능동적인 사업자가 수동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한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에 적용받는 것이다.

나. 약관법의 적용범위

약관법 제30조에서는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기타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은 조항별·업종별로 불공정 약관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에 대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5조)

2. 약관의 사전적 규제

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가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나. 개별약정의 우선(법 제4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 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약관의 공정한 해석(법 제5조)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의 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 표준약관의 심사보급(법 제19조의 2)

표준약관제도는 '92년 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사된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의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거래와 신속과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불공정 약관의 유형 및 사례

약관내용이 다음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약관은 무효이며 이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가. 일반원칙(법 제6조)

계약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원칙은 무효이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례〉

○고속버스·시외버스 운송약관 중 고객측 사정으로 환불할 경우 출발한 후에는 50%를 공제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운행취소시에는 10%만을 추가하여 배상한다는 조항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채무보증 범위를 대표이사 책임시 뿐만 아니라 취임전 채무승계 및 향후 모든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약정한다는 조항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채무로까지 확장한다는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사례〉

○콘도미니엄 분양 약관 중 오퍼회원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재산은 사업자가 수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수탁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 책임하에 제 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

게 한 조항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동안 병원측은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보증 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이 보증 약정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로 한다는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나. 부당한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 또는 제한하는 약관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례〉

○체육시설 이용시 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사고 발생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

○임대상가의 경우 화재나 도난 발생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사례〉

○차량전화이용 약관 중 사업자가 시외전화 회선고장 또는 통화정지 등으로 대화자와 통화접속이 불가능할 때 시외전화를 청구한 자로부터 통화취소 수수료를 납입하도록 규정한 조항

○프로야구 관람약관 중 고객이 운동장에서 연습 혹은 경기 중 파울볼, 기타에 의한 부상의 경우 응급치료만 책임진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을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사례〉

○자동차판매약관 중 자동차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보증기간 이내의 자동차구성 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인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목적물의 공동관리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1년간 보수책임을 지며, 내부시설의 하자는 고객이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정한 조항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채무자는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93조)

그리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따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7조)

〈사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율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인 연25%를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연 48%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석유대리점의 자금대여계약서상 위약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대여금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고 위약으로 인한 손해가 30%를 초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는 조항 ■

짧은 글 · 긴 생각 ③

세 사람의 석공

세 사람의 석공이

성전 건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차례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소. 일이 재미있습니까?”

그러자 세 사람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천만에요. 하는 수 없이 합니다. 밥 때문이지요.”

“뭐, 의무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요.”

“기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를 생각하면

감격에 차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첫째 석공은 일을 대하는 자신의 처지에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 석공은 짜증과 염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석공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은 일하는 사람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닐까요?

나는 솔직히 말해 남에게 내세울만한 '주특기'도 '취미생활'도 없는 그야말로 요즈음 보기드문 문화적, 사회적, 영양 결핍인 '썩맥'이다. 그래서 나는 제주도 취미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다.

당구, 글재주, 말재주, 또 그렇다고 모두가 즐겨하는 잡기놀이에도 그리 능란하지 못하다. 내가 명절이나 무슨 때에 즉, 집안의 형제들이나 어른들, 혹은 회사의 직원들이 모이는 집들이 등

서정성이 듬뿍 담긴 노랫말이 좋아

김남정

삼성전자 업무팀 과장

“

아무튼 개개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어떤 형태로든 각 개인이 갖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보면
노래부르는 사람의
생각이나 현재의 심경을
알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에서 흔히 하는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같은 것에도 재주가 별로 없다. 일례로 형제들끼리 고스톱을 하면 나를 칩사대접해 주면서 상전의 자리에 앉혀준다. 나보다 손윗분이 많이 계신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내주머니의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사정을 잘 알면서도 나는 모든 놀이에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다.

돈을 잃고 따는 것은 게임의 부산물이지 게임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음인 까닭(?)이기 때문이다. (패자의 변명일지도 모른다)

이런 나에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겨우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노래' 즉 고매한 클래식이 아닌 서민들이 즐기는 '뽕짝'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내가 뽕짜를 즐겨부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부르기 쉽고 어느 정도의 술기운에도 산뜻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라도 한곡 정도의 비장의 '뽕짝'이 다 있을 것이다. 뽕짝 중에서 나는 '울

고님은 박달재'를 가장 즐겨부른다. 이 노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즐겁거나 마음이 울적할 적에는 무의식중에 내 입속에서 튀어나온다. 좋아도 이 노래, 슬퍼도 이 노래, 한잔하고 이 노래, 아이들하고 놀 때도 ... 아무튼 이 노래는 나의 애창곡이다.

내가 왜 이 노래를 무의식 중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데 아마 군대시절에 이 노래가 내 머리속에 잠재되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었다. 80년대 초반에 군생활을 할 때 제천 부근에 있는 눈덮인 '박달재 고개'를 넘어 가면서 잠시 쉬어간 적이 있었는데 을씨년스러운 겨울날 아침에 이 고개에서 나를 맞이해 준 것은 바람소리와 박달재 휴게소에서 흘러나오던 이 노래 소리밖에 없었는데 그 때의 그 광경이 아직도 내 뇌리에 남아 혼자 있을 때 즐겨 부르게 된 것 같다.

또 한 곡의 노래는 '번지없는 주막'이다. 이 노래는 내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신 선친께서 즐겨 부르셨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나역시 아버님이 보고싶을 때면 이 노래를 한잔 술에 기대어 콧노래로 부르곤 한다.

이무튼 개개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어떤 형태로든 각 개인이 갖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보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생각이나 현재의 심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원들 하고 회식이나 모임이 있는 날이면 노래방을 즐겨서 찾는데 그 곳에서 부르는 직원들의 주특기 노래를 들으며 직원들의 심적 상태를 어느정도 파악한다. 노래는 나의 이런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 두 노래를 최근에는 웬만한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 금동이가 넘었던 박달재도 문패없는 주막도 너무 쓸쓸하고 허무하게 비쳐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 내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를 한국 찾아(?) 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그



겨울의 찻집(조용필)'이다. 이 노래의 가사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한편의 시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노래를 즐겨 부른다.

사춘기적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품었음직한 꿈이 바로 문학소년·소녀의 꿈일 것이다. 나역시 그런 부류중의 한 사람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정년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된 한편의 시,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서정적인 노래나 의미있는 가사말이 나오는 노래는 지금 이 나이에도 한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외어버리고 곧 따라서 흥얼거린다.

김건모의 '스피드'나 클론의 '콩파리 샴바라'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술 한잔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곳에 어울리는 노래는 역시 가사말이 아름다운 서정적인 노래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곱장리

이용선 / 전주일보 주필

남한테서 돈이나 곡식을 빌려쓰면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 그냥 빌려온 본전만 갚는게 아니라 변리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말로 길미다. 돈만 그런것이 아니다. 배고플 때 쌀 1말을 빌려다 먹었으면 갚을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사례가 붙어야 한다.

이것이 쉬운말로 하면 이자(利子)요, 금리(金利)인데 돈이 귀하고 혼하고에 따라서 그 변리로 여러가지로 유통되었다. 은행에서 빌리는 돈도 장기저리로 싼 것이 있는가 하면 시중 이자에 가까울만큼 비싼 단기채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이자에 관한 규정은 세계 각국이 저나를 대로의 이자율을 쓰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옛날부터 돈을 얻어쓰면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것이 풍습이었다. 누구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서 큰일을 치루려면 목돈이 필요하고 그런 돈마련이 안되었을 때는 남에게서 빌려다 쓰고 갚는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이자율은 과연 얼마가 상식이었는가? 나라에서 곡식을 얻어다 먹고 갚는 이자는 보통 1말에 2되, 즉 10분의 2였다.

백성들은 해마다 봄이면 춘궁기가 닥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이런 절량국민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나라에서는 환곡(還穀)이라는 것을 빌려주었다. 굶는 백성에게 사창(社倉)에 쌓아둔 곡식을 빌려주어 먹게하는 구제의 뜻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이자만을 받아 들이게 했다.

원래 곡식이라는 것은 그해 소출된 것은 그해에 방아를 찧어 먹어야지 한해나 두해씩 묵히게 되면 맛도 없고 차진기도 빠져버린다. 그래서 나라에서 받아들인 세금곡식도 계속 재고미(在庫米)를 내주었다가 햇곡식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봄에 묵은 곡식을 내주었다가 가을에 햇곡식으로 바뀌서 묵은쌀(古米)을 없애는 효과도 있어서 바꾸는데 들어가는 경비에다 약간의 이식(利息)을 붙여 「1斗에 2升」이자를 정례화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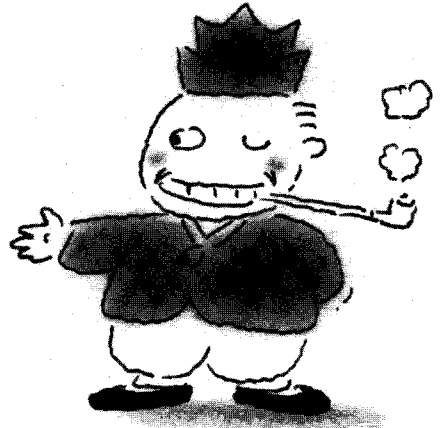
그런데 백성들이 부자집에서 곡식을 빌릴 때는 여름에 보리 1말을 얻어다 먹고 가을에 쌀 1말로 갚아야 한다. 보리와 쌀이 맞바꾸어지는 것인데 가격으로 따져서는 보리는 쌀의 절반을 치는 것이 상식이었으니까 비싼 이자가 아닐 수 없다. 또 쌀로치면 봄에 1말을 빌려오고 가을에 갚을 때는 1말가웃, 즉 50% 이자를 더한다. 이것이 장리(長利)이다.

‘그런데 장리가 아니라 장리의 두배를 받는 곱장리(倍長利)가 있소.’

‘이자가 얼마요?’

‘봄에 쌀 1말 얻어먹고 가을에 쌀 2말로 갚아야죠. 이자가 100% 늘어난 것이요.’

이런 곱장리 제도는 절량농가가 많았던 해방후 6.25~9.28 무렵까지도 통용되었었다. 그래서 농민의 20% 정도가 곱장리에 묻혀 헤어지지 못하여서 하다하다 못해서 박정희 정권은 고리채정리법을 써버렸었다.



그리고 62년에는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빚준 부채는 일정한 법정이자(法定利子)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도 현실은 전혀 달리 움직였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서 법정이자로 돈을 빌려쓸 수 있는가. 「달러이자」가 성행하고 곱장리가 아니라 아예 「입도선매(立稻先賣)」가 통용되는데 누가 법정이자만 받고 돈이나 쌀을 내놓겠는가.

‘곱장리 100% 이자가 비싸다고 하지 마시오.’

‘왜?’

‘곡식으로 보면 양(量)이 2배로 늘어나는 이자니까 흑독하다고 할 것이지만 돈으로 따져 보슈. 쌀을 빌려주는 봄 시세는 한말에 1만원이었지만 가을 쌀값이 봄과 가을과는 2배까지도 솟았다 내렸다 하니까 돈으로 치면 본전 빌려주고 본전만 받은 셈이오.’

지금처럼 연중(年中)을 통털어 곡가(穀價)가 안정된 때가 아니다. 등락폭이 심해 실제로 가을 쌀값이 봄이면 2배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곱장리도 본전만 받는

셈이라는 계산도 나올만 했다.

그런데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도 급할 때는 2배 이자를 냈던 경우가 있다.

‘나라에서 2배 이자를 누구한테 냈소?’

‘장사꾼한테 냈지.’

‘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소?’

‘급할 때 군량미(軍糧米)를 조달해주고 받아갔던 환미(還米)를 아오?’

가령 두만강 국경지대로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난리가 났다고 하자. 그쪽에 많은 군사를 출동시키고 급히 군량미를 보내 주어야 하는데 시간이 급하다. 그런 때는 나라에서 상인들에게 급히 현지에 군량미를 사서 바치게 하고 양권(糧券)으로 갚는데 그것이 꼭 2배 이자였다. 군량미 1천석을 바쳤으면 2천석짜리 양권을 발행해서 경기도 지방 국곡(國穀)에서 받아가도록 조치한 것이다.

상인으로서 2배 장사, 아니 2배 이자를 받는 셈이지만 나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경기도 쌀 5천섬을 함경도까지 보내려면 수송비가 5천섬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미(還米) 조치를 해버린 것이다. ■